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되, 당월 계약단가 수준에 맞추어 협의 조정 합니다.**
-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양로원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마) 납품 기사가 양로원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고 양로원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야함.)
-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마스크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대창양로원장

[대창양로원 공고 제2026-02호]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대창양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 2026년 대창양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나. 납품장소 : 대창양로원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매촌1길 157)
- 다. 기초금액 : 금일억삼천이백만원(금132,000,000원) ※ 부가세 포함
※ 금액산정은 2026년도 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라.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곡류, 공산품류, 가공류 등
- 마. 납품(계약)기간 : 2026.08.01 ~ 2027.07.31(12개월)
-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6.07.22.(수) 09:00 ~ 2026.07.28.(화) 18:00
- 아. **업체선정 방법 : 제출된 제안서(입찰서류) 심사 및 제안서 설명회(현장 발표) 평가를 종합하여, 대창양로원 내부의 [식자재입찰 심사위원회]평가기준에 준하여 평가**
- 자. 낙찰통보 : 2026.07.30.(목) 11:00(개별통보 및 G2B)

구 분	일 정
입찰공고기간	2026.07.21(화) ~ 07.28(화)
입찰서류제출기간	2026.07.22.(수) 10:00~ 07.28(화) 18:00까지 도착분
제안서 설명회	2026.07.29.(수) 10:00
선정업체발표	2026.07.30.(목) 11:00 (개별통보 및 G2B)
계약체결일	2026.07.31.(금)

차. **단가적용원칙 : 일반 식자재(가공품, 공산품 등)는 계약 시 고정단가로 적용되며, 단, 가격변동이 심한 신선농산물(채소, 과일 등)은 공신력 있는 기관(농협,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시세자료를 기준으로 월 단위 변동을 반영하여 상호 협의 하에 조정 적용합니다.**

2. 제안서 설명회

- 가. 일시 : 2026. 07. 29.(수) 10:00
- 나. 장소 : 대창양로원 1층 회의실
- 다. 제안 설명 방법 : 업체발표 10분, 질의답변 10분(총 20분)
- ※ 상기 일정은 양로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정해진 일시에 설명회 참여하지 않을 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향후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적격확인)를 진행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 당 3억원 이상)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마.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는(본사, 지사, 지점, 물류센터) 업장이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등)이 있는 업체

사.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 탱크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아. 주2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7시30분 ~ 8시30분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양로원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영양사 및 조리사)검수를 받아야 함.

자.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월단위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차. 다음의 경우 식자재 납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합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2)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양로원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4) 납품 기사가 양로원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5)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경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입찰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시설에 귀속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현재호)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격 미달자가 낙찰 될 경우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요구 서류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낙찰을 취소함

6.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되어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서류제출기간 : 2026.07.22(수) 10:00 ~ 07.28(화) 18:00(주말 접수 포함)

다. 접수장소 : 대창양로원 사무실

라.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방문제출(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매촌1길 157 대창양로원)

마.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6)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 7)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상수도는 최근 3개월간 납부영수증 사본) 1부
- 8) 냉장, 냉동차량 관련서류(차량등록증) 1부
- 9)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각 1부
- 10)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식중독보험 등) 각 1부
- 11) **업체 기초조사표 1부(별지 2호)**
- 12)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별지 3호)**
-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지 4호)**
- 14) 식품단가 견적서 및 식품사양서
- 15) **서약서 1부(별지 5호)**
- 16)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6호)**
- 17) **입찰결과 이행각서(별지 7호)**
- 18)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업체의 자유양식) 1부.
- 19) 친한경인증서, 신용등급확인서 등 기타 첨부자료 각 1부.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미제출시 미자격자로 간주함.

7.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업체의 강점 위주로 작성하되,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라.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마.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바.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사. 본 양로원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 아.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대창양로원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다.
- 자. 본 제안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우리 양로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차. 제안 진행 중 우리 양로원의 계획방침 변경(사업내용 및 예산) 등의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카.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8. 선정방법

- 가. 대창양로원 식자재입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서류)와 제안 설명회(발표)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나. 위원회는 평가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제안서 종합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100점 만점 기준 8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이 중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 계약 대상으로 선정한다.
- 다. 평가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라. 우선 계약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마. 최종 낙찰통보는 대창양로원 홈페이지 및 G2B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 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지정된 기일내에 계약에 체결하여야 한다.
- 사.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아. “종합평가 시, 업체가 제출한 식품단가 견적서의 고정단가 적정성 및 신선농산물 변동단가 적용기준의 유리함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함.”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 [별지4호]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 다. 채택된 제안서는 대창양로원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라. 낙찰된 자가 물품견적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산을 잘못하여 발생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 마. 물품규격서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영양사(☎054-955-0038)으로 문의하시고,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창양로원 식자재 계약담당(☎054-955-00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21.

창 양 로 원 장

자재납품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 라 함)은 대창양로원(이하 “갑” 이라 한다)와 입찰에 의해 선정된 식자재 납품업체(이하 “을” 이라 한다)간의 구내식당 급식 관련 식자재의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 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단가) ① 공급단가는 계약 당시 “을” 이 “갑” 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② 품목별 물품견적서에 없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의 단가는 소비자정상가(농산물의 경우 시장가격)에 입찰 시 투찰률을 적용하여 다시 정한다.
③ 납품계약품목 및 수량은 추정 수량이므로, 대창양로원의 식수 인원 변경 등의 사유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기간) **2026. 08. 01 ~ 2027. 07. 31.(12개월)**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 “갑”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1일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갑”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7:30~08:30에 대창양로원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영양사 및 조리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갑”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 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2:00까지 재 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 ④ 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품목별 물품견적서에 없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단가는 쌍방 협의에 의해 다시 정한다.)
- ⑤ “을”은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 ① “을”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갑”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 “을”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 ① “을”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 ② “을”이 “갑”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표 1]**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쯤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 ③ 또한,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 ④ “을”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 “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 탑 차를 가동하여 운송)
 6.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갑”은 “을”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양도 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 “을”은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후 “갑”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 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을”은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별표 1], [별표 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③납품시 을의 실수 등 사유로 인하여 1회이상 검수지적서를 받을시 향후 1년간 우리시설의 부식납품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② 입찰과정에서 약속한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다.

【별표 1】

[검사·검수 및 반품기준]

1.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2.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겹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4.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 (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

【별표 2】

〔공통 및 품목별 준수사항〕

1. 공통 기준

-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 3)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 4)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양로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 5)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 6)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 7)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 8)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에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 9)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 10)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2.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2)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 명, 제조 년 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절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 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

【별지 1호】

입찰공고번호 : 대창양로원 2026-02호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개요	입찰건명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일자	2026년 7월 일
신청인	상호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인)	생년월일	
	업태		종목	
취급품목	☐ 쌀 및 잡곡류 ☐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 공산품 ☐ 소모품			
시설현황	작업장규모		창고규모	
	작업장위치		냉장/냉동고	
차량현황	냉장/냉동차		기타	
납품가격기준		도매(), 소매(), 기타()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기타()		
납품시간준수여부		오전07:30 ~ 08:30 가능(), 불가능()		
납품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km) *대창양로원(경북 고령군 쌍림면 매촌1길 157)		
입찰보증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사용인감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납부방법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속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2026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7월 일				
신청인 : (인)				
대창양로원 귀하				

【별지 2호】

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NO	구분	작성내용	비고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배상금 - 1인당 : 천만원 - 1사고당 : 천만원	필수
2	사업장 기구·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위탁작업(%)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중)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중) ○ 생채소 소독실 (총 중)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숙성실(㎡), 전처리 작업공간(㎡) 농약검사실(㎡), 기타(㎡)	필수
3	축·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해당업체
4	냉동·냉장 탭 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탭 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대)	필수
5	직원현황	○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필수
6	2026년도 6월 현재 기준 납품실적 ※별지3 양식 첨부	○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필수
7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 작업장 소독업체명()소독방법()연 소독횟수(회) ○ 차량 소독업체명()소독방법()연 소독횟수(회)	필수
8	물품 단가표 제출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 2026. 6월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필수
9	전자발주시스템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필수
10	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수질검사() 위생점검()	필수
11	소량 주문 납품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필수

【별지 3호】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및 관공서등 공공기관
2. 대상기간 : 2024년 7월 ~ 2026년 6월 말까지 (최근 2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 : 천원)

납품기관명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 연락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7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대창양로원 귀하

【별지 4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창양로원」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창양로원에서 발주하는 제반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창양로원에서 시행 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창양로원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창양로원**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해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창양로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창양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익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7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창양로원 귀하

【별지 5호】

서 약 서

본사는 급식자재 납품 희망업체로서 대창양로원의 계약자 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급식자재 납품 희망업체로서 기관에서 요구하는 급식자재 납품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본 급식자재 납품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을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위탁 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 실시 사항에 대해 기관 측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익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7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창양로원 귀하

【별지 6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대창양로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함에 있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개인 정보 제공 동
의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목적

항 목	목 적
부식입찰관련 모든 제출 사항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경력, 자격 및 면허, 차량정보등)	대창양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 기간
대창양로원 문서보존 기간 경과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한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위 제공 사항은 납품업
체 선정과 관련하여 본인식별절차에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7 월 일

업 체 명 : (서명)

(※ 반드시 자필서명 후 제출)

대창양로원장 귀하

【별지 7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제2026-02호	입찰일자	2026. 7 .
입찰건명	2026년 대창양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대창양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
과 협상결렬 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
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7 .

소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대창양로원장 귀하

【별지 8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에서 귀사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7. .

소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대창양로원장 귀하

【별지 9호】

제안서 심사 신청서

- ☐ 찰 사 업 명 : 2026년 대창양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발 주 기 관 : 대창양로원
☐ 제 출 일 자 :

위 건 식자재물품 납품 계약 공급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불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26. 7. .

주 소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대창양로원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인감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을 귀사와의 계약 및 모든 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 7 .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창양로원장 귀하